

강의료 지급에 관한 규정

2002.12.01. 제정
2015.03.01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에서 개설한 강좌를 맡아 강의한 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료 구분) 강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초빙교수강의료 : 본교 소속 교원 외의 강사가 본교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강좌를 맡아 강의하는 경우
2. 시간강의료 : 본교 소속 교원의 초과 시수 발생 시 및 본교 교직원이 본인의 고유 업무 외의 대학원 강의를 담당할 경우
3. 특강강의료 : 특강·공개강좌 등 일시적인 강좌를 담당할 경우에 지급하는 강의료

제3조(강의료지급) ① 강의료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시간강의료는 실제로 강의한 시수에 따라 또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③ 공동 강의인 경우에는 실제로 강의한 시수에 따라 지급한다.

제4조(삭제)

제5조(삭제)

제6조(삭제)

제7조(삭제)

제7조의 1(초빙 및 시간강의료) 본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 시 학기별로 초빙 교수 및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강의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7조의 2(특별강의료)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강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강의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7조의 3(작문지도비) 본교 재직 중인 교원이 영작문 수업을 1개 이상 담당하는

경우 두 번째 학급부터 학급당 월 120,000원을 학기 중에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사항)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